

第 32 回 達西區議會 (臨時會) **議會本會議會議錄**

第 2 號 (附錄)

大邱廣域市 達西區議會 事務課

目 次

- 1. 大邱廣域市 達西區 行政機構設置條例 (案)
- 2. 大邱廣域市 達西區 地方公務員定員條例 (案)
- 3. 95年度 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 (案)
- 以上 3件 審查報告書 內務委員會

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

95. 1. 24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5. 1. 17
- 다. 회부일자 : 95. 1. 17
- 라. 상정일자 : 95. 1. 23

2. 제안설명 요지 (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서상우)

가. 제안이유

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94. 12. 20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됨.

나. 주요골자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중 실·과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백창기)

본 조례 제정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

단체에 두는 실·국 및 과등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시준칙에 의거,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토론요지

동 조례안의 내용중 위생과 업무인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는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향후 개정되어야 할 것임.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

7. 첨부 :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1부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95-1
----------	------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실·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도시국을 둔다.

제3조(기획감사실)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, 구의회 운영지원, 기구 및 정원, 예산, 법제, 감사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, 행정전산화 및 통신, 통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4조(문화공보실)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, 구정보도, 지방문화예술, 종교, 문화재보호관리,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5조(총무국) ① 총무국에서 총무과, 시민과, 재무과, 세무과, 민방위과를 둔다.

② 총무과는 서무, 의전, 보안 및 청사관리,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, 선거 및 국민투표, 출장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, 주민등록 및 인감, 새마을 운동, 자연보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③ 시민과는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, 호적 및 국적,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재무과는 국비·시비·구비회계 총괄, 지출, 물품, 국공유재산관리, 차량의 취득, 처분 및 운영,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,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⑤ 세무과는 세무행정 종합조정, 지방세 부과, 징수 및 세무조사, 세입에 관한 법칙 사건처리, 부동산 평가 업무, 세외수입의 부과징수,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수립 및 실시,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,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, 비상대책 업무, 병무 및 향토예비군,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6조(사회산업국) ① 사회산업국에 사회과, 위생과, 가정복지과, 지역경제과, 환경보호과, 청

소과를 둔다.

② 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, 생활보호 및 구호,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,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,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③ 위생과는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, 공중 및 식품위생의 지도감독,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, 공중목욕탕관리,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, 여성단체지도 육성, 부녀·아동복지법인 및 부녀·아동후생시설에 관한 사항, 묘지 매·회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,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⑤ 지역경제과는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조정, 상공업 진흥, 중소기업 육성, 연료수급, 공산품 품질관리, 농업행정의 종합계획, 양곡·축산 및 잡업,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조정,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, 배출시설 공해업소 지도단속, 환경오염원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⑦ 청소과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,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, 분뇨·쓰레기 수거,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7조(도시국) ① 도시국에 도시개발과, 건축과, 건설과, 지역교통과, 지적과를 둔다.

②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, 개발제한구역관리, 도시정비 및 재개발계획수립 및 추진, 광고물관리, 임업행정의 종합계획, 산림보호육성, 공원개발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③ 건축과는 건축허가, 무허가 건축물 단속, 건축자재생산업에 관한 사항, 건축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건설과는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·이용 및 개발, 토목건설사업계획의 수립시행, 자연재해 방재대책, 하천·공유수면 유지관리, 하수도 사용료과징, 건설사업 보상업무 증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⑤ 지역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, 장·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, 투자재원 확보,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, 화물자가용자동차 운송 인·허가, 자동차 운송사업 알선 허가, 택시운송사업 시설확인 및 지도감독, 자동차관리사업 허가,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지적과는 지적공부 보존관리,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, 이동지 검사 및 정리, 지적측량기초점 보존관리,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 감독, 택지소유 상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, 개별

지가 조사, 토지거래규제 등 업무, 부동산, 중개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8조(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) ① 실·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